

1. 지적유형(제목) :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의 공시이율 부당 적용

2. 제재대상사실

- 「보험업법」 제127조제1항, 「동법시행령」 제71조제1항에 의하면,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, 동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
- 「보험업감독규정」 제7-50조의2 및 별표 14-2 제4호에 의하면, 방카상품의 공시이율은 다른 모집종사자에 의하여 모집되고 있는 상품에 비하여 높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에도
- 2005. 7. 1. ~ 2007. 6. 30. 기간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되는 보험상품인 '무배당 ○○○○ 연금보험'의 공시이율(판매기간 평균 5.15%)을 다른 모집종사자에 의해 모집되는 상품인 '무배당 ○○○○○○연금보험'의 공시이율(판매기간 평균4.70%)보다 높게(0.45%p) 결정하여 총 1,084건(수입보험료 33,291백만원)의 보험계약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 원	견책 : 1명

< 관련법규 >

1. 「보험업법」 제127조(기초서류 변경의 신고)
2. 「보험업법시행령」 제71조(기초서류 변경의 신고)
3. 「보험업감독규정」 제7-50조의2(기초서류 변경의 신고)